

수원고등법원 2021. 3. 4 선고 2020나124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소영진, 오주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남기욱

변 론 종 결 2021. 2. 18.

판 결 선 고 2021. 3. 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4. 선고 2018가합40574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3 목록 중 순번 제1, 19, 22 기재 각 거래 일시에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1,550,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D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거래일시에 체결된 합계 869,348,41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69,348,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253,274,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을 인용한 다음, 위 각하 부분에 해당하는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의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 인용 부분 및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2.의 나. 별지3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2. 나. 2) 나)항의 “(2)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 돈 부분”, “(4) 별지3 목록 순번 제20, 21번 기재 돈 부분”, 2. 나. 2)항의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나.항의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 돈 부분

D가 2014. 7. 21. 피고에게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77,723,725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채무자인 D가 이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 L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지상 K빌딩 4층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호실을 매수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04. 12.경 D, L으로부터 위 각 호실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고, E이 2014년경 다시 위 각 호실의 매수인이 되면서 각 최종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은 계약금 상당액을 최초 매수인인 D를 거쳐 종전 매수인이었던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모자기간인 D와 E 사이에 향후 세무조사시 증여세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D가 이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룬다.

을 제9 내지 11,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지급이 D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 L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위 K빌딩 4층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호실을 매수하였다. E은 2014. 7. 21. D에게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 각 돈과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D는 그 직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위 각 송금액은 D, L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② D, L은 2004. 12.경 피고에게 위 K빌딩 4층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 합의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 중 AE은 매수인의 지위가 D, L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2004.

6. 28. 피고의 인감 등 제반 서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③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입금금액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D는 E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즉시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수분양자 중 한 명인 AE은 2004년경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매수인 지위의 이전에 따라 E이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4) 별지3 목록 순번 제20, 21번 기재 돈 부분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I 계좌로 송금된 2014. 10. 27.자 4,000,000원 및 2014. 11. 25.자 10,000,000원의 입출금명이 모두 'D'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I 계좌로 송금된 위 각 돈의 출금계좌명이 모두 D가 아닌 'F'인 사실이 인정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를 해당 예금의 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출금계좌의 명의자가 밝혀진 이상 그로부터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출금계좌 명의자가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통상 은행 거래내역에 기재된 "입출금명"은 임의로 기재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I 계좌의 위 각 돈에 관한 입출금명이 D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D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목록 순번 제1, 19, 22번 기재 각 돈은 D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3 목록 순번 제1, 19, 22번 기재 각 거래일시에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금액 합계 161,550,667원(= 별지 3 목록 순번 제1의 10,000,000원 + 제19의 150,050,667원 + 제22의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3) 1) 원고의 주장

D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에게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 20, 21번 기재 각 거래일시에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각 증여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D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증여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위 양수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 20, 21번 기재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합계 91,723,725원(= 별지 3 목록 총 합계 253,274,392원 - 위 인용된 부분의 합계 161,550,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D가 피고의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1, 14, 19, 23 내지 26, 28,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에게 별지3 목록 순번 제2 내지 18, 20, 21번 기재 각 거래일시에 각 거래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3 목록 순번 제1, 19, 22번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별지3]

피고 I계좌 입금금액 목록

순번	거래일시	거래금액(원)	적요	비고
1	2013. 10. 10.	10,000,000	D	갑 제11호증 33쪽
2	2014. 7. 21.	1,260,675	D	갑 제11호증 37쪽
3	2014. 7. 21.	8,144,900	D	
4	2014. 7. 21.	7,830,300	D	
5	2014. 7. 21.	4,430,000	D	
6	2014. 7. 21.	4,020,900	D	
7	2014. 7. 21.	1,260,675	D	
8	2014. 7. 21.	5,928,000	D	
9	2014. 7. 21.	5,376,800	D	
10	2014. 7. 21.	4,765,800	D	
11	2014. 7. 21.	3,950,000	D	
12	2014. 7. 21.	1,260,675	D	
13	2014. 7. 21.	3,950,700	D	
14	2014. 7. 21.	3,950,000	D	
15	2014. 7. 21.	3,810,300	D	
16	2014. 7. 21.	5,928,000	D	갑 제11호증 38쪽
17	2014. 7. 21.	5,928,000	D	
18	2014. 7. 21.	5,928,000	D	
19	2014. 10. 16.	150,050,667	D	갑 제11호증 41쪽
20	2014. 10. 27.	4,000,000	D	
21	2014. 11. 25.	10,000,000	D	갑 제11호증 41쪽
22	2015. 8. 25.	1,500,000	D	
합계		253,274,392		

[별지1]

피고 H계좌 입금금액 목록

순번	거래일시	거래금액(원)	적요	비고
1	2010. 5. 12.	14,707,450	D	갑 제10호증 22쪽
2	2010. 6. 15.	14,738,740	D	
3	2010. 8. 12.	14,738,740	D	
4	2010. 12. 16.	14,738,740	D	
5	2011. 1. 19.	14,738,740	D	
6	2011. 2. 22.	14,738,740	D	
7	2011. 3. 23.	13,916,540	D	
8	2011. 4. 15.	13,916,540	D	
9	2011. 5. 17.	13,916,540	D	
10	2011. 6. 17.	13,916,540	D	
11	2011. 7. 14.	13,916,540	D	
12	2011. 8. 19.	13,916,540	D	
13	2011. 9. 22.	13,916,540	D	
14	2011. 10. 13.	13,916,540	D	
15	2011. 11. 14.	13,916,540	D	
16	2011. 12. 15.	13,916,540	D	
17	2012. 1. 12.	13,916,540	D	
18	2012. 2. 15.	6,559,940	B회사 D	갑 제10호증 23쪽
19	2012. 3. 15.	14,396,254	D	
20	2012. 4. 13.	11,586,374	D	
21	2012. 5. 15.	12,236,074	D	
22	2012. 6. 15.	12,893,194	D	
23	2012. 7. 17.	13,393,974	D	
24	2012. 8. 16.	13,785,714	D	
25	2012. 9. 14.	13,800,614	D	
26	2012. 10. 15.	14,426,914	D	
27	2012. 11. 15.	14,882,814	D	
28	2012. 12. 12.	14,913,874	D	
29	2013. 1. 16.	14,986,134	D	
30	2013. 2. 19.	14,811,014	D	
31	2013. 3. 14.	12,522,960	D	
32	2013. 4. 16.	12,698,080	D	
33	2013. 5. 14.	14,460,000	D	
합계		453,837,018		

[별지2]

피고 I계좌 입금금액 목록

순번	거래일시	거래금액(원)	적요	비고
1	2012. 1. 6.	50,000,000	D	갑 제11호증 29쪽
2	2012. 1. 6.	7,500,000	D	
3	2012. 3. 2.	16,355,000	D	
4	2012. 4. 19.	145,800	D	
5	2012. 4. 26.	134,600	D	
6	2012. 5. 8.	2,000,000	D	갑 제11호증 30쪽
7	2012. 5. 22.	853,600	D	
8	2012. 5. 23.	298,000	D	
9	2012. 5. 23.	10,000,000	D	
10	2013. 2. 7.	5,000,000	D	갑 제11호증 31쪽
11	2013. 2. 20.	50,000	D	
12	2013. 2. 27.	5,500,000	D	
13	2013. 3. 21.	4,000,000	D	
14	2013. 3. 28. ⁴⁾	400,000	D	갑 제11호증 33쪽
15	2013. 9. 30.	15,700,000	D	
16	2013. 9. 30.	41,900,000	D	
17	2013. 9. 30.	2,400,000	D	
합계		162,237,000		

4) 이 사건 2019.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3. 3. 27.'은 '2013. 3. 28.'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는 항소취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선택한다.

2) 제1심법원은 주문에서 단순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나, 주위적 청구 중 인용한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보인다.

3)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별지3 목록 중 순번 제2 내지 18, 20, 21번 기재 각 증여계약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